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 개별소비세의 공제·환급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, 폐기사실 확인서류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상 관련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따른다”를 “따르고,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제31조에 따른 공제·환급 증명서 및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.”로 한다.

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“「개별소비세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”를 “「개별소비세법」 제20조,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적용례)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공제 및 환급 신청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 서 및 확인신청서(확인서)는 별 지 제28호의3서식에 <u>따른다.</u>	제15조(공제 및 환급 신청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르고, 영</u> <u>제34조제4항제7호나목의 폐기</u> <u>사실 확인서류는 「지방세법 시</u> <u>행규칙」 제31조에 따른 공제·환</u> <u>급 증명서 및 제31조의2에 따른</u> <u>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..</u>